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641
----------	-------

발의연월일 : 2026. 8. 19.

발 의 자 : 임종득 · 서천호 · 김용태
김태규 · 김승수 · 김정재
김기현 · 김성원 · 임이자
김예지 · 박성훈 · 이진숙
나경원 의원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등을 대상으로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의료기반의 확충을 위한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의 주민은 의료기관 및 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정주여건 악화에 더하여 추가적인 인구 유출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의료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인구감소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협진을 행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대상으로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사업을”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사업
2. 「의료법」 제34조에 따른 비대면협진을 행하는 사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법」 제34조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1항제2호의 개정 규정 중 “비대면협진”은 2026년 12월 23일까지는 “원격의료”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의료기반의 확충) ①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 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노인의 만성질환 예방·치료 등을 위 하여,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 기 어려운 사람 등을 <u>대상으로</u> <u>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을</u> <u>행하는 사업을</u> 수행하고 필요 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u><신 설></u> <u><신 설></u>	제23조(의료기반의 확충) ① ---- ----- ----- ----- ----- <u>대상으로</u> <u>다음 각 호의 사업을</u> ----- ----- -----.
② ~ ⑤ (생 략)	1. <u>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u> <u>을 행하는 사업</u> 2. 「의료법」 제34조에 따른 <u>비대면협진을 행하는 사업</u> ② ~ ⑤ (현행과 같음)